#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장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23

발의연월일: 2020. 8. 31.

발 의 자:이장섭·김민석·김경만

김민철 · 송갑석 · 인재근

정정순 · 이원택 · 김영호

이학영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.

어린이와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노인, 장애인 및 환자 등이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3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제4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- 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- 6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
- 7. 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3(맹견의 출입금지 등)	제13조의3(맹견의 출입금지 등) -
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	
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	
록 하여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
	른 노인복지시설
<u>&lt;신 설&gt;</u>	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
	<u>항 따른 장애인복지시설</u>
<u>&lt;신 설&gt;</u>	6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에 따
	른 의료기관
<u> &lt;신 설&gt;</u>	7. 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
	른 약국
<u>4.</u> (생 략)	<u>8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